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
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1. 의결주문

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해 '순직의무군경의 날'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'별표 1' 각종 기념일(제2조제1항 관련)에 '순직의무군경의 날' 신규 지정

4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 별첨

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8호부터 제53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5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"제53호"를 "제54호"로 한다.

번호	기념일	날짜	주관 부처	행사 내용
18	순직의무군경의 날	4월 넷째 금요일	국가보훈부	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	
연 락 처	(02) 2100 - 4080